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445
------------	-----

제출연월일 : 2001년 월 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정이유

-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시 필요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0. 12. 20 개정됨에 따라,
-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등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 지방자치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개발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수 있는 위치로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받은 장소에 공고하고,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함(제2조)
- 나. 납부고지서는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명의로 하며, 고지서 내용에는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함(제3조)
- 다. 부담금은 학교용지의 매입비 및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제4조)

- 라. 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도록 함(제5조)
- 마.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사실 조사·확인후 20일 이내에 과태료 금액 등을 통보하되, 과태료 금액은 주택건설 세대수에 따라 5백만원·7백만원·1천만원 등 3종으로 구분하여 정함(제6조)
- 바. 부담금의 부과·징수사무를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함(제7조)

조례안 : 별첨

관계법령 발췌 : 별첨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사용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의 절차)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공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1. 일간신문에 게재
 2. 견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게시
 3.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으로서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의 승인을 얻은 장소에 게시
-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안내문 제작이나 분양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의 부과대상자
 2.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
 3.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4.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③ 개발사업 및 분양계획의 승인권자가 개발사업계획 또는 분양계획·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도지사는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하여 부과·징수사무가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된 경

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출장소장 명의로 납부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납부고지서에 납부의무자, 납부금액 및 산정방법·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제4조 (부담금의 사용) 부담금은 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1. 학교용지매입비 및 감정평가수수료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2.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3.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①부담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부담금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③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④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⑤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

로 명시하여 20일이내에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조사서, 과태료 등 필요한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5백만원
 2.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 7백만원
 3. 1,0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 1천만원

③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등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세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2000년 2월 28일 이후에 승인된 개발사업분중 이 조례에 의하여 분양공고한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 제5조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지(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이주용 택지를 분양받는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을 제외한다)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승인에 따른 토지 또는 주택의 분양공고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제9조 (권한의 위임)** ① 시·도지사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당해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접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업무와 교육감의 의견표시에 관한 업무
를 시·군·구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제10조 (과태료)** ① 제5조제2항에서 규정에 위반하여 부담금의 부과·징수
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시행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제8조 (과태료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시·도 조례로 정한다.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제3조 (징수금의 배분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개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로 한다.
- ②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학교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는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시·도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도가 부담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은 시·도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담금은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된다.

-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물납으로 받은 경우 그 물납받은 토지를 시·군 또는 자치구에 귀속되는 부담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 ④시·군 및 자치구는 토지관리와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토지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 (회계의 구분)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